

창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가단1110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1. 11. 1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6. 1. 20. C에게 1,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21. 1. 20.,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34.89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3. 13.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3. 14. C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8. C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33230호), 위 법원은 2019. 3. 28. ‘C는 원고에게 20,032,546원 및 그중 9,948,655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4.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 및 C의 부 F은 2021. 5. 30.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상속지분 3/9), 자녀인 피고, C, H(상속지분 각 2/9)가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21. 11. 18.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7,212,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양수금은 2022. 4. 15. 기준 30,681,776원 및 그중 9,948,655원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 중 배우자인 G은 3/9 지분을, 자녀인 피고, C, H는 각 2/9 지분씩을 상속하였고, C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채가 많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다.

피고는 C는 망인의 생전부터 사업 실패 등으로 망인의 재산을 탕진한 반면, 피고는 망인을 생전에 부양하고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망인의 2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정당하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2/9에 미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피고와 C의 관계, C가 사업 실패로 망인의 가산을 탕진하여 왔으므로 모친 G이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잃게 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자신의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강진명